

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4호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28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	5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인턴02	행정	5명	속초해양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인턴03	행정	5명	강릉해양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인턴04	행정	4명	동해해양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인턴05	행정	2명	울진해양경찰서(경상북도 울진군)
인턴06	행정	7명	포항해양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6. 4. 6. ~ 10. 6.(6개월)
- (보 수) 월 2,156,88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① 담당 예정 직무

지원코드	채용 분야	근무부서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	동해지방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행사, 기록물 관리 등 행정 업무지원 ○ 정책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 운영 등 홍보업무 ○ 전산·통계, 데이터 정보 등 관리 지원 ○ 국내·외 해양 관련 자료 모니터링 및 조사 정리 ○ 해양오염예방 점검 관련 통계·분석
인턴02	행정	속초해양경찰서	
인턴03	행정	강릉해양경찰서	
인턴04	행정	동해해양경찰서	
인턴05	행정	울진해양경찰서	
인턴06	행정	포항해양경찰서	

※ 수행예정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원코드별 '직무기술서'(붙임) 참조 (← 직무기술서 서식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지침」 <참고자료 9> 참고)

② 정책 참여 활동

-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추진
- 유관기관(KOMSA, 기상청 등)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예방
- 해양환경 변화(오염물질, 유형 등) 대비 선제적 예방 활동
- AI를 활용한 동해해역 위험 요인 분석 및 데이터 제공

※ 참여활동 내용은 추후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① (연령)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1. 응시원서 2. 인턴지원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13.(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청년인재 DB에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자료 제공 예정
 -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6. 2. 27.(금) ~ 3. 9.(월)
- 원서접수 : 2026. 2. 27.(금) ~ 3. 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3. 13.(금)
- 면접시험일 : 2026. 3. 24.(화) ~ 3. 25.(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3. 30.(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2. 27.(금) ~ 3. 9.(월)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청년인턴 지원서, 정책제안서 각 1부(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관서 채용포기, 불합격 등 경우에는 채용일정 고려 타 관서 지원 가능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33-680-2416,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십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	e-mail
------	----	-----	--------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국적확인)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 ▪ 성 명 * | (서명) | ▪ 생년월일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e-mail * | | | |
| ▪ 직 장 | | ▪ 직 위 | |
| ▪ 직장전화 | | ▪ 연락팩스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2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근로자	<input type="radio"/>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input type="radio"/> 산재근로자	<input type="radio"/> 대리인(간이대차급금/심사청구/구상금협의조정/최초요양급여신청)·유족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123456"/> - <input type="text" value="....."/>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인증 사업자: 카카오페이,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토스,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 드림인증-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일반근로자] 박정연 님 인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자주 찾는 서비스 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형료 조회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심사청구서 작성

공지사항 + **알림창** < > ||

	공지사항	알림창
new	연간 정기적업으로 인한 토털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2025.01.04)	2024-12-31
new	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재)인증 결과 알림	2024-12-26
new	(거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대상기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2024-12-20
new	(거울철 비상진료-한시적용) 거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	2024-12-20
new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2025-01-02
new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025-01-02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월 환산액 2,096,270 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유 8시간 포함)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최저임금위원회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Home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본 자르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구분 산재 **고용**

· 조회구분 **상용** 일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예** 아니오

⚠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input type="button" value="신청"/> <input type="button" value="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input style="border: 2px solid red;" type="button" value="신청"/> <input type="button" value="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input type="button" value="신청"/> <input type="button" value="메일전송"/>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p>※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p> <p>-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별지서식 제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8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